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38

발의연월일: 2021. 3. 23.

발 의 자: 송언석 · 윤창현 · 임이자

김성원 • 태영호 • 허은아

김정재 · 권명호 · 박덕흠

정희용 · 구자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글로벌 드론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 드론 활용수요 역시 지속 증가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업체 수가 2020년 말 기준 총 3, 645개로 2015년 697개 대비 5배 이상 확대되었음. 이로 인해 초경량비행장치 분야의 사고예방과 불법비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필요성이 점차 대두 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드론 사용사업체 및 항공레저스포 츠 사업 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인력 부족으로 정기 안전점검 강화 및 데이터 기반 사고예방 시스템 마련에 어려움이 존재함.

또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는 등 제재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약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종합안전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규정을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 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의 안전개선 명령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5조제5항).
-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 공역 또는 관제공역 중 관제권을 비행한 사람과 무인자유기구를 비 행시킨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61조제4항).
-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 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166조제2항).

법률 제 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5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의2.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 명령 업무
- 13의3.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중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61조제4항 중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1.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
- 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관제공역 중 관제권을 비행한

사람

3.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제166조제2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4.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의경우는 제외한다)
- 5. 제1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 6.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5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	
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	
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	
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13의2.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u>안전개선명령 업무</u>
<u><신 설></u>	<u>13의3.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u>
	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같
	은 항 제5호에 따른 초경량비
	행장치사용사업자 및 항공레
	저스포츠사업자 중 초경량비
	행장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업자에 한정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
용 등의 죄) ① ~ ③ (생 략)	용 등의 죄) ① ~ ③ (현행과

④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6조(과태료) ① (생 략)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 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
- 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 치를 이용하여 관제공역 중 관제권을 비행한 사람
- 3.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 행시킨 사람

<u><삭 제></u>

제16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니	나에
해덕	강하는	사	에게는	= 300	만원	0]
하으	의 과E	개료-	를 부	과한디		
1	0	(>1]	コトハ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7. (생략)
- 8. 제1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
 <삭 제>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

 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

2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 조제4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 한다)
- 5. 제1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 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 한 사람
- 6.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3	-	 						

1. ~ 7. (현행과 같음) <<u>삭 제></u> <u>한 사람</u>

9.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10.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삭 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 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④ ~ ⑥ (생 략)

<삭 제>

④ ~ ⑥ (현행과 같음)